

김선화 / 4월+5월 / 기초 GS / 5회

수강번호	문제 1	문제 2	문제 3	문제 4	문항 총점	석차	상위%	응시인원
540015	15	12.5	0	0	27.5	1	2.78%	36
542403	15	12.5	0	0	27.5	1	2.78%	
537564	14	13	0	0	27	3	8.33%	
539220	14.5	12.5	0	0	27	3	8.33%	
538830	14	12.5	0	0	26.5	5	13.89%	
539206	15	11.5	0	0	26.5	5	13.89%	
535464	13.5	12.5	0	0	26	7	19.44%	
537439	12.5	12.5	0	0	25	8	22.22%	
537725	13	11.5	0	0	24.5	9	25.00%	
539173	12.5	12	0	0	24.5	9	25.00%	
540696	14	10.5	0	0	24.5	9	25.00%	
537475	17	7	0	0	24	12	33.33%	
539733	12.5	11.5	0	0	24	12	33.33%	
538166	12.5	11	0	0	23.5	14	38.89%	
538471	12.5	11	0	0	23.5	14	38.89%	
539816	14	9.5	0	0	23.5	14	38.89%	
537436	13.5	9.5	0	0	23	17	47.22%	
539709	13	10	0	0	23	17	47.22%	
539860	11	11	0	0	22	19	52.78%	
537428	10	11.5	0	0	21.5	20	55.56%	
539628	13.5	8	0	0	21.5	20	55.56%	
535218	17.5	2.5	0	0	20	22	61.11%	
538651	8	12	0	0	20	22	61.11%	
542931	11.5	8	0	0	19.5	24	66.67%	
535647	8.5	9.5	0	0	18	25	69.44%	
539084	9	7.5	0	0	16.5	26	72.22%	
535325	16	0	0	0	16	27	75.00%	
535161	15.5	0	0	0	15.5	28	77.78%	
535333	12	3	0	0	15	29	80.56%	
539152	11.5	2	0	0	13.5	30	83.33%	
539747	11	2.5	0	0	13.5	30	83.33%	
111111	8.5	4	0	0	12.5	32	88.89%	
539795	10.5	2	0	0	12.5	32	88.89%	
535255	4.5	7	0	0	11.5	34	94.44%	
540226	8	3.5	0	0	11.5	34	94.44%	
538047	2.5	8	0	0	10.5	36	100.00%	

김선화/4월/기초GS/5회/1,2번	채점자
	조은석

1. 채점기준

문제	설문	쟁점	배점	최고점	
1	1	저작권 침해 요건 검토	1	7	
		甲의 이용행위 검토 - 복제, 공연	1		
		A의 저작인격권 침해 여부(소극)	2		
		A의 저작재산권 침해 여부(소극)	3		
	2	2	甲의 이용행위 검토 - 복제, 배포	1	7
			이 사건 폰트의 저작물성 인정 여부(적극)	3	
			이 사건 폰트의 저작재산권 제한 여부(적극)	3	
	3	3	乙의 행위 검토 - 복제	1	7
			이 사건 논문 작성 행위가 법 제28조에 해당하는지 여부(적극)	6	
2	1	甲과 乙의 관계 - 공동저작자	3	3	
	2	丙의 이용행위 검토 - 복제 / 복제 및 배포	2	6	
		丙이 조각상 A 이용에 정당권원 있는지 여부(소극)	4		
	3	乙의 법 제48조를 위반한 권리행사가 다른 공동저작재산권자 甲의 저작재산권을 침해한 것인지 여부(소극)	5	5	

5회차도 답안 쓰시느라 모두 고생 많으셨습니다. :D

2. 목차

많은 분들의 목차가 나아졌음을 느낍니다!

이제는 사안 포섭 목차에서 **문제에서 제시된 표현을 이용하여 구체적으로 사안 포섭**하시는 연습을 하시면 더 좋을 것 같습니다. 만약, 문제적 표현으로 A, B, C 라는 사실관계가 주어지면, 답안에 {A인 **점**, B인 **점**, C인 **점**에 비추어 보아 ~(소결)이다.} 와 같이 ‘~인 점’ 이란 표현을 사용하여 사안 포섭하였는데, 아직 사안 포섭이 어려우신 분들께 추천드립니다.

3. 내용

많은 분들이 놓치시거나 잘못 기재한 논점들은 다음과 같습니다.

<문1 설1>

- 1) 저작권을 침해하였는지 물었으므로 저작인격권(사안에서는 특히 동일성 유지권)과 저작재산권을 모두 검토해야 합니다.
- 2) 제25조 3항은 저작인격권이 아니라 저작 '재산권' 제한사유에 해당합니다. 저작 '인격권' 의 경우에는 제12조 제2항 단서 또는 제13조 제2항 각호에 따른 제한사유로 판단해야 합니다.

<문1 설2>

일부 컴퓨터프로그램저작물의 저작재산권 제한사유의 경우(재판/수사, 학교, 사적복제, 시험문제)는 제37조의2에 따라 제101조의3(특례)을 검토해야 합니다.

<문2>

타겟 판례가 명확하여 많은 분들께서 잘 작성해 주셨습니다.

4. 소결

이전 기초GS에서는 피드백을 받았어도, 다음 시간에는 매번 처음 보는 논점을 작성하게 되므로 실력이 느는 것 같지 않아 답답해하실 수 있습니다. 진짜 실력 상승은 기초GS가 마무리되고 무한 반복을 돌리는 5~7월에 이루어지므로, 현재의 상황에 너무 스트레스 받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17.5

[문제-1]

I. 서문(1)

4.5

1. 문제의 소재

甲의 A의 저작물인 이사건 영하의 이용행위가
법과조항의 저작재산권 제한 사유에 해당하는지 문제된다.

2. 침해 요건

- ① 유효한 저작물임
- ② 이항하며
- ③ 의거성이 있어야 하고
- ④ 실질적 유사성이 있어야 한다.
- ⑤ 다만, 저작재산권 제한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침해가 아니다.

3. 甲의 이용행위가 법과조항에 대응하는지 여부 (제국)

(1) 학교 또는 교육기관의 이용 - 법과조항

- ① 초·중등교육법 등에 따른 학교가
- ② 수업목적으로 이용하는 경우
- ③ 공표된 저작물의
- ④ 일부분을 복제 등을 할 수 있다.

(2) 사안의 경우

1) 초·중등교육법에 따른 학교인지 여부 (제국)

교사 甲은 고등학교의 교사이므로, 초·중등 교육법에 따른 학교에서 이용하였다.

← 잘못.
사유에요!
네!!

2) 수업목적이인지 여부 (제국)

甲은 윤리수업시간에 학생들을 가르칠 목적으로 이용하였다.

3) 공표된 저작물인지 여부 (제국)

← 잘못... 자필...이

A가 제작한 이 사건 영하는 2025년에 개봉하였고 전 세계적으로 히트하였으므로 공표되었다.

4) 일부분을 복제 등하였는지 여부 (객관적)

특히 이 사건 영하의 윤리적인 문제가 되, 양한 부분을 세 장면 정도 뽑아 각각 1분 정도씩 보여주었으며, 어떠한 변형을 가한 것이 없으므로 이 사건 영하의 일부분을 복제하였다.

6.5, + 공연

5) 소제 - 2차 2차 2차 2차 2차

甲이 고등학교에서 수업시간에 수업목적으로 이 사건 영하의 일부분을 보여준 수업한 것은 2차 2차 2차의 저작재산권 제한사유에 해당한다.

4. 실문의 해결 - 비침해

甲이 A의 저작물을 이용한 행위는 저작재산권 제한사유에 해당하여 침해가 아니다.

+ 저작인격권 침해!

II. 실문(2)

6.5

(1. 문제의 소재

Very good!!!!

B의 저작물인 폰트가 컴퓨터프로그램저작물로서 인정되는지 여부 및 컴퓨터프로그램저작물의 경우 2차 2차의 저작재산권 제한사유가 적용되는지 문제된다.



2. B의 폰트가 컴퓨터프로그램저작물인지 여부 저작

(1) 컴퓨터프로그램 저작물의 의미 - 법조항 16호

컴퓨터프로그램 저작물은 '특정한 결과를 얻기 위해 컴퓨터 내에서 각 단계별로 사용되는 일련의 '지시·명령'으로 표현된 창작물이다.

(2) 사안의 경우 - 컴퓨터프로그램 저작물성 인정

① 폰트는 특정한 서체의 글자의 축적을 목적으로 하는 '특정한 결과'가 존재하고, 서체와 같은 그림을 그리는 연산작업을 실행시키는 일련의 '지시·명령'으로 표현된 창작물이다. ② 또한 B는 폰트를 제작하는 과정에서 글자의 윤곽선을 수정하거나 제작하기 위한 제어값들의 좌표값과 그 지시·명령어 선택에 개입 표현하는 등 독자적인 창작적 표현이 존재하므로 ③ B의 폰트는 컴퓨터프로그램 저작물로서 인정된다.

Good!

3. A가 B의 저작재산권을 침해하였는지 여부 인격

(1) 컴퓨터프로그램에 관한 특례 공 제반

1) 원칙 - 법조항 31조 2

프로그램에 대해서는 법조항 31조 2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2) 예외 - 법조항 31조 3 1항 2호

초·중·고·대학교에서 교육을 담당하는 자가 수업과정에서 제공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복제 또는 배포에 해당하는

Good!!

경우에는 그 목적을 위하여 필요한 범위에서 공표된 프로그램을 복제 또는 배포할 수 있다. 다만, 프로그램의 종류·양도 등에 비하여 프로그램의 저작재산권자의 이익을 부당하게 해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사안의 경우 - 비합법

① 고등학교의 교사 甲이 ② 윤리시간의 수업목적을 자료로

③ 이 사건 폰트를 복제하여 만든 유인물을 학생들에게

배포한 행위는 ④ 법(이론)의 제 1항 3호 본문에 해당

한 ⑤ 저작재산권자 B의 이익을 부당하게 침해하는

사정도 보이지 않으므로 ⑥ 甲은 B의 저작재산권을

침해하지 않았다.

III. 서문(3)

1. 문제의 소재

6.5 very good !!!

2이 대학원의 연구를 위한 논문이 이 사건 영한을 삼입한 것이 정당한 범위 내 공정한 관행에 합치되게 인용한 것인지 문제된다.

2. 2의 행위가 법 28조에 해당하는지 여부 - 저극

(1) 공표된 저작물의 인용의 의미 및 제외

① 공표된 저작물은 교육·연구 등을 위하여 정당한 범위 내에서 공정한 관행에 합치되게 인용할 수 있다. (법 28)

③ 이는 항문의 방재와 공익을 위한 것이다.

(2) '정당한 범위 내' 공정한 관행에 합치'의 의미(判例)

① 인용의 '정당한 범위'는 피인용저작물이 인용저작물에 대해 부경개성격을 가지는 관계라고 인정되어야 하고,

② '정당한 범위 내 공정한 관행에 합치'하는지 여부는 인용의 목적, 저작물의 성격, 피인용저작물을 수록한 방법, 인용된 내용과 분량, 동사의 인방에 관할, 유사 저작물에 대한 수급을 대체하는지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한다.

(3) 사안의 경유 - 法 282 해당

① 대항원생 2은 시대별 상업영화 전개 양상에 관한 연구를 목적으로 자신의 논문이 A의 저작물을 인용하였고, ② 이때 이 사건 영화는 그 일부 캡처 사진과 썸네일이 그쪽 분량에 불과한 정도가 인용되었으나 인용한 논문의 전체적인 분량인 500쪽에 비교하여 보았을 때 피인용저작물인 영화는 논문에 대해 부경개성격을 가지는 것으로 보아 정당한 범위 내라는 것을 인정할 수 있다. ③ 또한 인용저작물은 상업영화의 양상에 대한 논문이고 피인용저작물은 3시간의 영화이므로 논문에 인용된 2쪽 분량의 사진과 썸네일이 그 영화의 수급을 대체한다고 보기도 어렵다.

④ 따라서 2이 A의 저작물을 인용한 행위는 法 282의 공표된 저작물의 인용의 저작재산권 침해 사안에 해당한다.

2. 선행의 배정 - 2의 주장 타당

2의 행위는 법 28조의 공표된 지식물의 인용 행위에 해당하며 A의 지식재산권이 제한되므로, 침해가 아니라 2의 과정은 타당하다. (결론)

[문제2] '권속상 문제' (권속권행은 아닌 '법')

I. 선출문제

1. 문제의 이해

甲과 乙은 권속상 A를 같이 제작하나, 제작행위상 공동제작자 아닌 문제이다.

2. 권속상 A에 공동제작자인지 여부 (정답)

(1) 공동제작자의 의의 (법조 21)

2인 이상이 공동으로 행한 저작물로서 각자 이바지한 부분을 분배하여 이용할 수 있는 것을 말한다.

(2) 판례기준 - '귀씨'

① 2인 이상 연가 '주장상인 문헌에 기여한 자' 여야 하며, ② 그들이 공동제작의사로서, 가리고 주장상인 문헌에 기여하여 공동 기여를 하며 ③ 분배할 수 없는 단일한 저작물을 만들어내는 의사로, 그러한 과장점을 지닌 경우이다.

(3) 선출의 경우

① 甲과 乙은 개성을 담은, 주장상 표현이 담긴 권속상 A를 ② 공동으로 창작, 향유하는 의사 하며, ③ 말그대로 제작권행이 없는 서로 협의하여 공동제작했다. ④ 권속상 A는 분배할 수 없는 단일한 저작물로서, ⑤ 본 주장상 공동제작물이다.

gwd

3. 설문의 동시성

공동지각을 지각상 A를 관상하는 甲과 乙은 공동지각자로서 지위를 갖는다.

II. 설문(2) 5.5

1. 문제의 1224

공동지각과 甲의 동의 없이 지각상 A를 1분제 하여 잡기에 실이 '배판' 한 가지 (주) 지각재산권 침해인지 판정하라.

2. 공동지각물의 지각재산권 1분제 (1분, 480)

공동지각물 지각, 재산권을 지각재산권이 모두의 중 행위가 없으면 행사할 수 있다.

3. 법 48 지각재산권 행사에 이용하거나 방해되는지 (정답)

동일한 공동지각, 자 3인인 복제등 이용행위로 지각재산권 행사이고, 그 1인의 권리행사에 다른 공동지각권 권리의 동시성 필요하므로, 전원의 행위가 없는 이용행위로 그 지각의 지분은 효력이 없다고 한다.

4. 甲의 甲 지각재산권 침해 여부 (정답)

(1) 甲의 이용권 여부 (정답)

甲은 공동지각자 3 중 2의 동의만 받으면, A의 이용허락을
무효이다.

(2) 정당한 권한을 가진 甲의 A 복제. 배포 행위에 관해

甲이 저작물 A를 정당한 방법으로 복제. 배포 행위를 함은 甲 저작재산
권을 침해한다(法 16)가 아니므로, 이를 침해. 실의
행위인 것은 배판권(法 20조 본문) 침해이다.

(가 책기도 복제 가능)

5. 실의 행위

甲은 甲 저작재산권을 침해한다.

III. 설문(3) 45

1. 문제의 해결

Z이 甲 저작물이 이용허락을 받지 않고도 저작재산권
침해인지 묻는다.

2. 법 48 위반한 (인)의 복제. 배포. 전대 (인)
위(행위)에 따르면, 공동지각자 2나 다른 공동지각자
행위 없이 공동저작물을 이용하는 것도 이는 공동저작
사태에서 저작재산권 행사에 대한 방법은 위반한
것. 단 다른 공동저작물 저작재산권자의 침해가 되는
것은 아니다.

3. 검토

'제1항'에 따르면 지각권 보충에 관한 사정, 특히 99 ④에 비교하는 때, 지각권 보충에 관한 법이 타당하다.

4. 결론의 함의

'제1항' 본문에 따르면, 2은 무 지각권 보충을 포함하는 것은 아니다. 다만 지각권 보충 가능한 경우에서 보충을 인정하는 법이 타당하다.